

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 해운·중동 수출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당초 3월 31일→ 6월 30일)할 계획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월 30일(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 참고1, 2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홈택스/우편)
 - 아울러,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또한, 이번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여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향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담당자	사무관	황진하 (044-204-3312)
<협조>	조사국 조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501)
		담당자	사무관	박상기 (044-204-3502)



참고1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①홈택스 전자신청)

□ (신청방법) ①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②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① 홈택스 전자신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interface. The navigation menu at the top includes '증명·등록·신청' (Proof·Registration·Application), which is highlighted. Below it, the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Tax-related Application·Reporting Common Field) is selected. In the left sidebar,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is also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dropdown menu for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Reporting and Payment Deadline (Detail Search)), with the option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Reporting and Payment Deadline by Reporting Category) selected.

◆ 메뉴 경로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검색 키워드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 ||

대상 신고서

※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는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세목구분	☒ 소득·법인·부가·소비·재산 ☐ 원천세
*분납구분	☒ 자납 ☐ 분납
*세목	법인세
*과세기간 (신고대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고구분	정기(확정)
*신고서종류	법인세 일반정기확정(내국세, 농·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	15,000,000

신청사항

신청기한 및 신청 가능 사유 바로가기

*당초기한	2026-03-31	*연장사유	기타
*연장사유상세	(작성예시) 중동상황 피해기업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고자 함		

○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연장 가능 기간 바로가기

※ 추가 입력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신청금액			
선택	분납차수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1	2026-06-30	10,000,000	0	0
☒	2	2026-09-01	5,000,000	0	0

참고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②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 부 할 국 세 의 내 용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신 고 분	과세기간(연도)	세 목	납부기한	금 액			금 액	
고 지 분	과세기간(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국세	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횟 수	세 목	납 부 기 한	분 납 금 액	국 세	가 산 금
1 회					
2 회					
3 회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1.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